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치매질환이나 정신질환, 의사표현 불가능, 문맹, 심리적 거부 등의 사유로 본인과 계약 체결이 어려우면 보호자 또는 법적대리인과의 계약도 가능하다.

방문요양서비스라 이용정원은 정함이 없고 이용 대상은 장기요양등급 1~5등급자이며, 이용 절차는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한 후, 이용에 필요한 서류의 사본을 제출받아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 등록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제13조 (계약목적)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계약기간과 급여이용시간, 계약해제, 권리와 의무 등의 내용 및 본인부담비용 기타 등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와 기관이 서로 확인하여 명확히 하고, 필수적인 설명을 함으로써 분쟁 등을 방지하며,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지켜서 서비스 제공자(기관)와 서비스 돌봄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있다.

제14조 (계약기간)

- ① 계약체결 시 계약기간은 급여계약일로부터 인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갱신 시 계약기간은 갱신한 장기요양인정 시작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 ② 계약 시작은 서비스 시작일을 말하나, 계약 당사자간의 사유로 인해 가끔 서비스 시작이 늦어질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계약 시 미리 설명을 한다.
- ③ 계약기간과 서비스 이용 시간은 계약서에 명시한다.
- ④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보호자)에게 재계약여부를 확인한 후 재계약한다.
-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변경내용을 변경계약서로 간단히 작성해서 우편물로 발송하여 회수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변경계약부분을 설명하고 서명을 받은 후 보관한다.

제 15조 (장기요양급여비용 월 한도이용료와 본인부담금 - 2026년)

(★25.06.25일부터 방문요양만 해당됨)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512,900	2,331,200	1,528,200	1 409,700	1,208,900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 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본인 부담			구 분	금액(원)	본인 부담		
		15%	9%	6%			15%	9%	6%
30분	17,450	2,618	1,571	1,047	150분	50,640	7,596	4,558	3,038
60분	25,320	3,798	2,279	1,509	180분	57,020	8,553	5,132	3,421
90분	34,120	5,118	2,071	2,047	210분	63,530	9,530	5,718	3,812
120분	43,430	6,515	3,909	2,606	240분	70,080	10,512	6,307	4,205

▶ 그 밖의 비급여 항목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비용(외래진료비, 약제비, 기호식품구입), **수가를 초과한 이용분**은 이용자 및 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 주요 내용

법적공휴일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이 50%가산되어 본인부담률도 **50%가산**됩니다.

(25년과 동일)

일요일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이 30%가산되어 본인부담률도 **30%가산**됩니다.

(25년과 동일)

변경: 중증(1,2등급) 수급자가 충분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돌봄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월 한도액이 상당히 인상되어,

2등급 4시간 이용시 **33회**, 1등급은 4시간 **35회** 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시간 1회 서비스는 4시간 2회를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현행 **8시간 서비스 이용가능 횟수는 월 8회로 유지**됩니다.

제 16조 (기관의 권리와 의무)

- ①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만 요구할 권리
- ② 본인부담금 납부 독촉 권리
- ③ 계약의 해제구성요건에 해당되면 계약 해제할 수 있는 권리
- ④ 서비스 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 ⑤ 계약 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할 의무

- ⑥ 사고나 위험상황으로부터 예방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
- ⑦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물품에 대한 분실, 파손 예방
- ⑧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개인정보 보호
- ⑨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

제17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와 의무)

- ① 표준약관에 따라 대상자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②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받을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③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 ④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⑤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부담금 납부에 관한 의무
- ⑥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⑦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사항 통보 의무

제18조 (계약해제)

- ① 수급자 (보호자)는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나.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인정에서 등급외 자가 된 경우
 - 다.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되었을 때
 - 라.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마.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바. 계약급여 종류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사. 계약급여 종류 서비스 제공 시간을 '갑'(또는 '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 변경했을 경우
 - 아. 기타 수급자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자. 기타 사유로 타기관의 이용을 원할 때
- ②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 해지 의사를 설명하고 장기요양급여 종결 통보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한다.